

중대법규 위반 10개 항목 사고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조항은 모두가 단순히 교통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의 특별 규정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가 사망, 쌍소니 사고 등 다음의 10가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여야 한다.

■ 신호·지시 위반 사고

신호·지시 위반이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 내용 중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로 황색주의 신호위반, 경찰관 등의 수신호 위반, 교통안전표지 지시 위반 등이 있다.

■ 중앙선 침범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란 자동차 등이 차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차선에 따른 통행 방법에 위반하여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자동차가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횡단·턴·후진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후진으로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진행 차로로 들어오는 경우

-빗길에서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단, 제한 속도내 운행 중 미끄러지며 발생한 경우는 예외)

■ 과속사고

도로교통법 제15조에서는 시·도지사는 도로에서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에게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속도를 제

한할 수 있고, 운전자는 최고 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 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사고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인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된다.

-지방경찰청이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에서 발생한 사고

-병진시, 앞차의 앞지르기시, 법 또는 경찰관의 앞지르기 금지 지시 때 앞지르기 중 사고

-앞지르기 허용 지점에서 앞지르기 중 사고

-2개 차로 사이로 앞지르기 중 사고

-주·정차 차량으로 부득이하게 앞지르기하던 중 사고

■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21조(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에 위반하여 인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된다.

-철도 건널목을 통과할 때 일단 정지한 다음 안전함을 확인하지 않고 통과하다가 일어난 사고

-철도 건널목 진입시 차단기가 내려져 있을 때, 차단기가 내려지려고 할 때, 경보기가 울리고 있을 때 진입하

다가일어난 사고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 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인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점멸신호 또는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을 때 보행자가 계속 진행하거나 되돌아가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음.
-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

■ 무면허운전 중 사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이 금지된 경우에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다.

- 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음주운전사고

주취 운전을 하거나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중 인사 사고를 말한다.

- 차량 전체가 주차 구획선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차량의 일부라도 주차 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다면 도로에서의 운전에도 해당

■ 보도 침범 · 통행 방법 위반 사고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통행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인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서 말하는 보도침범이란 보도에 차가 들어서거나 보도에 차체가 걸쳐진 행위를 말한다.

- 보도의 차량 출입 승인(점용 허가)을 받은 곳에 출입하다가 발생한 사고

- 보도가 차도의 높이와 동일하게 구조된 곳에서 인도의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사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운전자가 출발하기 전 차의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출발함으로써 탑승객이 추락, 부상을 당하였을 때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로 처리(단, 택시의 경우 목적지에 도착하면 출입문 개폐는 승객 자신이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로 처리하지는 않음) 

< 출처 : 이승일저, 자동차 알고 탑시다.>

- 정정합니다 -

지난 10월호에 게재된 ‘운전면허와 별점관리’ 중 잘 못된 내용이 있어 정정합니다.

2003년도 도로교통법 개정안 별표 16에 따르면,

- 규정속도 위반
 - 4km 초과 : 별점 30점
 - 20~40km 초과 : 별점 15점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별점 30점 (기존 15점에서 상향조정)

※ 보다 발전되고 앞서가는 안전기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